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 개진 기회 안내

HRA의 제안 사항 공공 지원 및 비상 지원 혜택과 서비스 발급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히 재배치, 퇴거 또는 임시 보호소 등의 상황에 대해 가구와 개인 소지품 보관 비용 지급이 필수적일 때,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국장이 뉴욕 시규(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표제 68 에 새롭게 11 장을 추가해 이러한 비용 지급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고, 그러한 혜택 요청을 HRA 에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청회 개최 시간 및 장소 HRA 에서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2016 년 11 월 17 일 오전 9 시 30 분에 시작됩니다. 공청회 장소는 Lower Manhattan 의 Spector Hall, 22 Reade Street 입니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칙안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 사이트.** NYC 시규 웹 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 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storagerule@hra.nyc.gov 를 통해 서면 의견서를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아래 주소로 서면 의견서를 우편 송부할 수 있습니다.

FIA Executive Office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150 Greenwich Street, 36th Floor
New York, NY 10007
Attention: Storage Rule

- **팩스.** HRA 에 (917) 639-0194 번으로 서면 의견서를 팩스 송부할 수 있습니다. 팩스 표지에 규칙 제목("Payment of Essential Storage Fees")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공청회에서 발언이 가능합니다. 공청회에서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의견 발표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일 전에 929-221-7367 번으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2016 년 11 월 17 일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발표 시간은 3 분입니다.

서면 의견서 제출 마감 기한이 있습니까? 서면 의견서 제출 마감 시간은 2016 년 11 월 17 일 오후 5 시입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 방법은?

공청회 참여를 위한 통역사가 필요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신 경우, 알려주십시오. 929-221-7367 번으로 전화하거나, storagerule@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17-639-0194 번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아래 주소로 서신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FIA Executive Office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150 Greenwich Street, 36th Floor
New York, NY 10007
Attention: Storage Rule

반드시 2016 년 11 월 10 일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개진된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http://rules.cityofnewyork.us/>를 방문하시면 규칙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후 며칠 이내로 규칙안에 관한 모든 서면 의견서 사본과 구두 의견 요약이 HRA 웹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본 HRA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HRA의 이러한 규칙안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섹션 603 및 1043, 뉴욕 사회복지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 섹션 34, 56, 61, 62, 77, 131, 159, 303(1)(k) 및 350-j, 그리고 뉴욕 행정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표제 18의 섹션 352.6(f), 370.3, 372.4 및 397.5(k)입니다. 해당 규칙안은 HRA의 최신 규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 규칙안이 HRA 안건 출간 당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RA의 규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칙은 뉴욕 시규 표제 6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 과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HRA는 규칙 제정 또는 개정 시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안내문 역시 시 헌장의 섹션 1043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규칙안의 근거 및 목적

HRA는 뉴욕 시규 표제 68에 새로운 11장을 추가해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가구 및 개인 소지품 보관을 위한 공공 및 비상 지원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규칙에 의거, 특정 절차와 제한에 따라 재배치, 퇴거 또는 임시 보호소 같은 상황 시 필수적일 때 가구 및 개인 소지품 보관을 위한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수당 또는 비상 지원(Emergency Assistance) 보조금을 발급합니다.

본 규칙안을 근거로 HRA는 보관료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3부의 서면 비용 견적서를 제출한 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안 보관 시설 또는 창고에 소지품을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지품을 보관 처리하지 못한 채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자 역시 HRA에 3부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 규칙안은 또한 HRA로 하여금 뉴욕 시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보호소 및 HRA 가정폭력 보호소에 거주하는 유자격 공공 지원 수령자를 대상으로 보관료 지급을 자동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호소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과 공공 지원 수령자가 아닌 보호소 주민의 경우, 월별로 신청하고 본 혜택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HRA는 자동적으로 아니라 보관 시설 또는 창고에 직접 비용을 지불합니다.

본 규칙안을 근거로 HRA는 합당한 사유 없이 보관료 청구서 및/또는 보관료 지급 신청서가 제시간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연체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칙안을 근거로 HRA는 다음의 경우 보관료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i) 필수적으로 3부의 서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ii) 필수적이지 않는데도 보관 소지품 양을 늘리려 할 경우
- (iii) 보관료 수당/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iv) 합당한 사유 없이 지원형 주거 시설(supportive housing) 제공 등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 시설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칙은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섹션 603 및 1043, 뉴욕 사회복지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 섹션 34, 56, 61, 62, 77, 131, 159, 303(1)(k) 및 350-j, 그리고 뉴욕 행정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표제 18의 섹션 352.6(f), 370.3, 372.4 및 397.5(k)에 의거한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HRA) 국장의 권한에 따라 제안됩니다.

새로운 자료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다”와 “반드시 한다”는 의무 요건을 나타내며 별도 명시하거나 문맥상 분명하게 다른 뜻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HRA 규정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1. 뉴욕 시규 표제 68을 다음과 같이 11장을 새롭게 추가해 개정합니다.

제 11 장: 필수적인 가구 및 개인 소지품 보관 수당

§ 11-01 필수적인 보관료의 지급.

(a) 정의.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1) “비상 지원(Emergency Assistance)”은 뉴욕 사회복지법 § 303(1)(k) 또는 350-j 및/또는 뉴욕 행정규정 표제 18 의 §§ 370.3, 372.4 및 397.5(k)에 의거해 발급되는 혜택을 의미한다.
- (2) “HRA”는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 (3) “개인”은 공공 지원 또는 비상 지원 신청자 또는 수령자를 의미한다.
- (4)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은 뉴욕 사회복지법 표제 10 에 의거한 가족 지원(Family Assistance)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 사회복지법 표제 3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거한 안전망 지원(Safety Net Assistance) 프로그램에 따른 지속적인 월 보조금 및 추가 수당을 의미한다.
- (5) “보관 시설”은 개인 재산을 보관 및 제거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점유인에 의한 보관 공간 점유의 목적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 (6) “보관 창고 운영자”는 뉴욕 시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 20-475 에 명시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b) 자격. HRA 는 본 섹션의 조항에 의거해 그러한 보관이 필수적인 경우, 재배치, 퇴거 또는 임시 보호소 같은 상황에 대해 개인의 가구 및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당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단, 해당 개인이 공공 지원 또는 비상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보관을 필요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

(c) 신청 절차와 보관료의 지급.

(1) 보관료에 대한 공공 지원 수당 또는 비상 지원 보조금 신청 방법.

- (A) 공공 지원을 수령하는 개인은 보관료에 대해 공공 지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은 그러한 수당을 직접, 팩스로, 우편으로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B) 공공 지원을 수령하지 않는 개인은 보관료에 대해 비상 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은 HRA 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해 그러한 보조금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2) 지급 방법:

- (A) 개인이 공공 지원을 수령하고 뉴욕 시 행정 규정 표제 18 의 파트 452 에 의거해 뉴욕 시 노숙자서비스부가 운영하거나 이를 대리해 운영되는 보호소 또는 HRA 가 운영하거나 이를 대리해 운영되는 가정폭력 보호소에 거주하고, 그러한 개인이 보관료 수당을 신청하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HRA 는 자동으로 그러한 개인을 대신해 월 보관료를 보관 시설 또는 창고 운영자에게 직접 발급하도록 한다.

- (B) 개인이 뉴욕 시 행정 규정 표제 18 의 파트 452 에 의거해 뉴욕 시 노숙자서비스부가 운영하거나 이를 대리해 운영되는 보호소 또는 HRA 가 운영하거나 이를 대리해 운영되는 가정폭력 보호소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공 지원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개인은 적절히 매월 기준으로 보관료에 대한 공공 지원 수당 또는 비상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HRA 는 본 단락에 의거해 이루어진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보관 시설 또는 보관 창고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금을 발급하도록 한다.
- (3) 이미 보관 처리되지 않은 소지물에 대해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개인의 경우, 3 개의 보관 시설 및/또는 보관 창고 운영자로부터 받은 서면 견적서를 HRA 에 제출해 HRA 의 결정에 따라 가장 비용 효율적인 보관 시설 또는 창고 운영자를 이용하도록 한다. 단, HRA 가 해당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존을 위해 즉각적인 소지물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HRA 는 연체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섹션에 의거해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 (A) 연체료가 발생하기 전에 본 하위 구절에 의거해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을 요청 또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보관료 납부 청구서를 제시기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다.
- (d) 개인의 소지물이 최소한 30 일간 보관되어 있고, 보관 시설 또는 보관 창고 운영자가 청구한 요금이 유사한 크기의 단위에 대해 청구되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요금 한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HRA 는 그러한 개인에게 통지일 후 30 일 이내에 3 개의 다른 보관 시설 및/또는 보관 창고 운영자로부터 받은 서면 견적서를 HRA 에 제출하고 HRA 이 결정에 따라 가장 비용 효율적인 보관 시설 또는 보관 창고 운영자로 개인의 소지물을 옮겨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HRA 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그러한 견적서 제출 시간에 대한 추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e) 거부의 근거. HRA 는 본 섹션에 의거해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 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개인에게 보관 시설 및/또는 보관 창고 운영자로부터 받은 3 부의 서면 견적서를 제출도록 요구되나 합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개인이 최초에 보관 처리한 양 이상으로 보관하는 가구 또는 개인 소지품의 양을 늘리려고 하나 왜 그러한 증가가 필수적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3) 개인이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4) 개인이 지원형 주거 시설을 포함하여 영구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합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주거를 거부한 경우.
- (5) 개인에게 보관료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요구되나 그러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뉴욕 시 법무부(NEW YORK CITY LAW DEPARTMENT)
법률 자문 부서(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헌장 §1043(d)에 의거한

확인서

규칙 표제: 보관료 지급

참조 번호: 2014 RG 097

규칙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본인은 본 사무실에서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을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d)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다음 같이 확인합니다.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은

- (i) 해당 법률 조항의 목적을 성립하도록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 (ii) 기타 관련 법률과 충돌하지 않고,
- (iii) 실효성과 적합성에 따라,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작성되었고,
- (iv) 실효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규칙과 해당 규칙에 의해 부과되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준과 목적에 대한 진술을 담고 있다.

/s/ STEVEN GOULDEN
법률 자문 대행(Acting Corporation Counsel)

날짜: 2016년 4월 12일

뉴욕 시 시장 운영실(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현장 섹션 1043(d)에 의거한
확인서/분석

규칙 표제: 보관료 지급

참조 번호: HRA-6

규칙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본인은 본 사무실에서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을 뉴욕 시 현장 섹션 1043(d)의 규정에 따라 분석하였음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합니다. 상기 규칙안은

- (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 (i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명시된 본 규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 (iii) 본 규칙안에는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s/ Francisco X. Navarro
시장 운영실(Mayor's Office of Operations)

2016 년 4 월 12 일
날짜